

■ 動力資源部告示 (第83-18号) ■

石油事業法시행령 第15條 第3項 및 第4項 의 규정에 의한 收入金の 납부 및 환급에 관 한 요령

石油事業法시행령(이하 「승이라 한다」) 第15條 第3項 및 第4項의 규정에 의한 收入金の 납부 및 환급요령을 同條 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83. 6. 30

動力資源部長官

第1條 (收入金の 납부) 승 제15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되는 石油중 선적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까지 수출이 이행되지 아니한 石油에 대한 收入金은 이를 그 다음날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되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한다.

$(\text{石油도입량} - \text{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石油量}) \times \text{당해석유통관시점에서 적용되는 收入金} \times \text{선적후 30일째 되는 날의 換率}$

第2條 (수출의 범위) 승 제15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대상이 되는 輸出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무역거래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된 수출. 다만, 해외일시 보관에 따른 특수 수출입 (Time Exchange)은 제외한다.
- ②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직접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石油製品으로서 외화로 대금결제가 되는 분
- ③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美합중국 군대에 외화로 납품하는 석유제품

第3條 (收入金 환급) ① 승 제15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입금은 매월별로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하며 수출월 직전월에 통관된 原油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text{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량}) \times (\text{수출한 제품을 생산한 석유정제업자의 직전월 통관분 原油에 대한 원유도입선다변화 촉진장려금 감액징수전 수입금의 원화납부액} \div \text{수출한 제품을 생산한 석유정제업자의 직전월통관 원유량})$

② 승 제15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되는 石油중 선적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후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환급할 收入金은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한다.

$(\text{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石油量}) \times (\text{당해석유제품 생산에 소요된 석유에 대하여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1 배럴당 수입금})$

③ 收入金の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 2 조 각호의 수출을 이행한 자로 한다. 다만, 내국신용장에 의한 석유제품공급의 경우에는 수출한 자 또는 석유제품공급자로 하되 석유제품공급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출자가 합의한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4條 (수출 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石油량의 산출) 수출석유제품 생산에 소요된 石油량은 수출석유제품량 (단위: 배럴)에 기준소요량 1.04를 승한 것으로 하되, 운할유 기유, 조유 및 운할유 수출의 경우에는 무역관리규정 제26-3조에 의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소요량 증명상의 소요량으로 한다. 다만, 승 제15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되는 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石油량은 $1 \div (\text{당해 석유도입 계약서에 명시된 석유제품의 총수율})$ 을 기준소요량으로 하되 동 총수율이 96.15% 이하인 경우의 기준 소요량은 1.04로 한다.

부 칙

- ① 이 告示는 1983년 6월 15일 이후 수출되는 石油분부터 적용한다.
- ② 승 제15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되는 석유제품 이외의 수출에 대한 수입금의 환급시기는 동력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③ 동력자원부고시 제82-34호(82. 8. 7)는 이 告示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

■ 動力資源部公告 (第83-18号) ■

石油類輸出추천요령

83년도 하반기 및 84년도 상반기 輸出入 期別公告 총칙 第6條 第1項의 규정에 따라 動力資源部長官의 수출추천품목에 대한 輸出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公告한다.

1983. 6. 30

動力資源部長官

CCCN	추천대상품목
2709	石油 및 역청유(原油에 한한다)
2710	1. 부분정제한 石油 2. 揮發油 (Gasoline, Naphtha) 3. 灯油 (Kerosene) 4. 輕油 (Diesel) 5. 重油 (輕質, 中質, 重質) 粗油 (Residual Fuel Oil) 6. 제트油
2711	프로판, 부탄

2. 추천대상자 : 石油精製業者, 단, 프로판·부탄은 가스사업자도 수출할 수 있음.
3. 추천범위 및 기준
 - 가. 국내수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
 - 나. 輸出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처리기간 : 2 일
5. 구비서류
 - 가. 수출허가(승인)신청서 5부
 - 나.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다. 사유서 1부
6. 추천장소 :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

부 칙

본 요령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産油国短信 □

사우디, 石油收入減少로 外交的 影響力 減退

사우디는 世界的 原油供給過剩現象으로 인해 中東에서의 外交的 影響力을 상당히 喪失했다고 Wall Street Journal紙가 28日 報道했다.

同紙에 따르면 사우디의 現在 外換保有高는 약 1,900億弗로서 여전히 막강한 財力을 保有하고 있지만 이것은 10年前에 예상한 5,000億弗보다 훨씬 못미치는 水準이다. 또한 石油歲入의 減少로 82~83會計年度의 歲

出이 計劃上의 900億弗에서 700億弗로 減縮되었으며 83~84會計年度의 歲出도 불과 750億弗이나 그나마 약 100億弗의 赤字를 記錄할 것으로 展望되었다.

사우디는 이같이 財政이 위축됨에 따라 아랍內의 影響力도 줄어들었으나 그러나 美國은 사우디를 여전히 中東最大國으로 評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